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최인순 의원 발의】



2025. 8.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71호로 2025년 8월 14일 최인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조례의 목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용역실명제 규정, 활용 규정,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과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 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정의(안 제2조)
- 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 명확화(안 제7조)
- 라. 용역실명제 규정의 신설(안 제12조)
- 마. 용역과제의 활용 규정 신설(안 제13조)
- 바. 용역결과물의 평가 규정 신설(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5.8.14.~2025.8.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복잡한 정책 과제의 등장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책 연구 용역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 목적과 연구 방식이 중복되는 무분별한 연구 용역 수행을 하거나, 위조·변조·표절 등의 연구 용역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 용역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며, 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신설하고, 사후관리까지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전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목적, 정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용역 실명제, 용역 결과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총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제 명	내 용
제1조	목적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제2조	정의	용역,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주관부서의 용어 정의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4조	기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규정

제5조	심의대상	원칙: 모든 용역사업 - 단,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기술, 전산, 임상연구, 단순조사 등 일반 용역 국시비 보조사업 1천만원 이하의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예외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총원: 15명 -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 당연직: 구청의 국소장 - 간사: 용역과제 관리 총괄 부서의 장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한차례 연임가능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 - 회의 진행을 위한 세부 규정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	회의	
제11조	심의요청 등	
제12조	용역실명제	용역 과제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 명시 -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
제13조	용역결과의 활용	-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개 규정 - 용역 결과물 평가 및 불이익 부과 규정
제14조	용역결과물의 공개	
제15조	용역결과물의 평가	
제16조	의견청취 등	-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제17조	회의결과 보고	
제18조	비밀누설금지	
제19조	수당 등	
제20조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종합의견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다수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우리 구(區)의 기존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실명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 결과물의 체계적 활용·공개·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결과물 부실, 연구 결과 활용 저조, 예산 낭비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안 제5조**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개정 전에는 일정 금액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용역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하나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조사, 1천만원 이하 사업 등을 예외로 규정하여 실무 부담 완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짐.
- **안 제12조**의 용역실명제 규정 관련하여 용역 추진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내부 행정 관리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름 공개는 공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제한 대상이 아님.¹⁾
- **안 제14조**에서는 용역 결과물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²⁾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1)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2)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의무 조항을 따른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를 예외로 명시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음.

-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³⁾에 따르면 계약 이행을 부실, 부당, 부정하게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에 부합한다고 여겨짐.

3)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참 고 자 료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